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권보호지원단 구성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의
현장상황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4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2. 11.
3. 회부연월일 : 2025. 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재난의 경우 그 관계자나 피해 유가족, 그리고 언론인 등이 그 현장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수습본부 또는 지역수습본부가 사고현장에서 인근에 설치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처와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당 재난에 대한 왜곡보도,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지역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상황

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인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 2 및 제15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 비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 재난 수습을 위해 현장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의 전달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5조의2제9항·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인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인권보호지원단의 구성과 파견 등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²⁾하고 있음.

또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도록 규정³⁾하고 있음.

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신설 2020. 6. 9.>
-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운

그런데 최근 소셜 미디어의 확산, 재난에 대한 언론 및 정치권의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그에 대한 왜곡 보도, 허위사실 유포 및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비방 등 인권 침해 행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 및 수습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재난현장 인근에 설치되어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인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 중앙사고수습 본부장 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 재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등을 대상으로 민원 접수·처리, 피해·사고수습

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⑤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⑦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및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⑧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수습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황 등 정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왜곡 보도,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인권보호지원단’의 구성 및 파견 근거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그 목적, 구성 범위 및 정부의 수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봄.

첫째, 개정안은 인권보호지원단의 구성·파견 목적을 재난 및 사고 수습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에 대해서도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가족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도 포함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인권보호지원단의 참여 대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재난의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명시된 기관 외에 다른 관계기관을 인권보호지원단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참여 기관의 범위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해양재난의 구조·구급·수색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인권보호지원단의 구성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셋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피해자들의 모욕·비방 등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는 기구를 별도 설치하기보다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모욕·비방 지원을 포함한 법률상담, 산재보상 등의 서비스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재난현장에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넷째, 현행법은 수습본부장⁴⁾이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수습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인권보호지원단도 요청 대상 기구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음으로, 수습본부장의 ‘현장상황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규정에 따른 현장 대응 기구 운영현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수습본부장이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근거⁵⁾를 두고 있으며, 행정안전부훈령인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⁶⁾에 따라 수습관리반, 대응협업반, 복구대책반, 홍보지원반 등으로 구성하여 현장에서의 신속한 수습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대책본부를 두도록 하면서,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⁷⁾, 이를 통해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6) [별표] 수습본부상황실 실무반 및 홍보지원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역할 기준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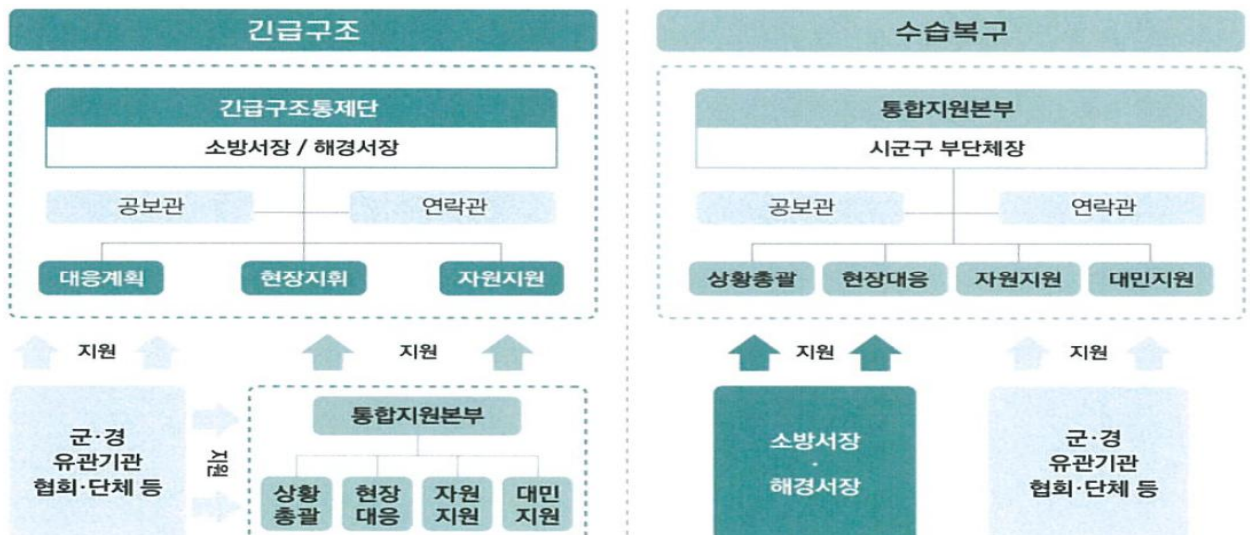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체계도]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자료: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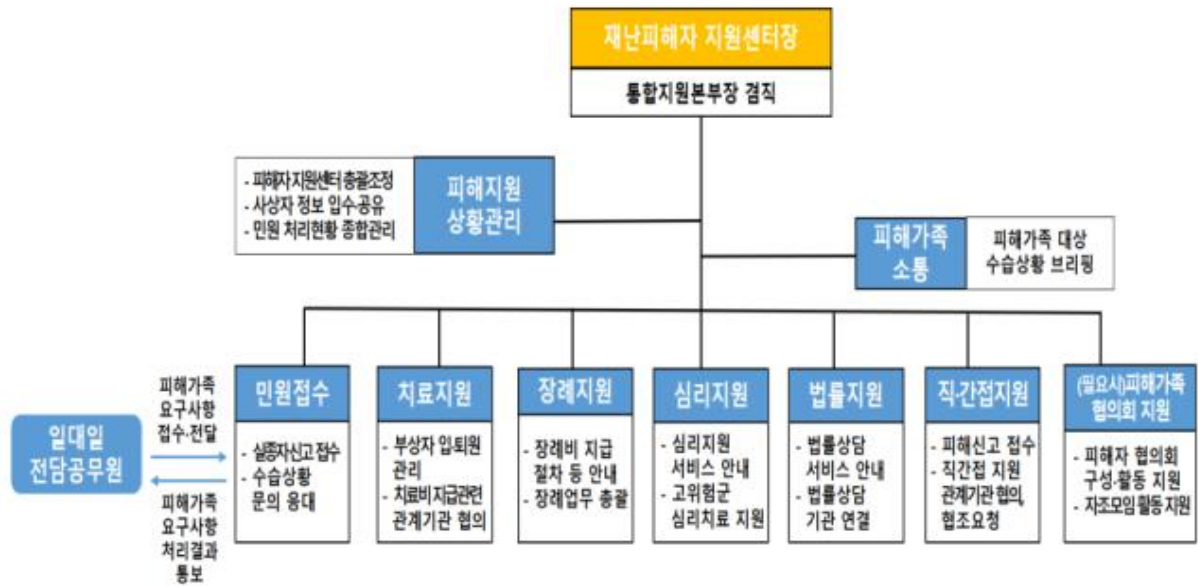
최근에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현장 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본부 내에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인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금융, 법률,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례(2024년)>

재난명 (운영기간)	피해 규모	참여기관	주요 실적
서천 특화시장 화재 (1.24.~3.20.)	점포 3개동 227개소 소실	20개 기관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피해접수 264건, 상담 626건, 재해소상공인 확인 발급 138건
화성 공장 화재 (6.24.~11.5.)	31명 (사망 23, 부상 8)	14개 기관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출입국외국인청 등)	상담 124건, 통역 176건, 의료 310건, 법률 42건, 설명회 9회 등
창원 호우 피해 (9.23.~10.15.)	주택 용벽 전도	3개 기관 (마산동부경찰서, 마산소방서 등)	임시숙박시설 및 식비 지원 43명, 친인척집 이용 구호비 지원 34명 등
인천 서구 공장 화재 (10.23.~11.8.)	76개동 (45개 업체)	7개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등)	융자 53건, 납세유예 7건, 법률 5건, 국민연금 5건, 기타 3건
안성·용인·이천 대설 피해 (12.3.~12.31.)	(안성) 6,993건/1,122억 (용인) 1,644건/353억 (이천) 2,741건/316억	9개 기관 (농협손해보험, 신용보증재단, 세무서 등)	융자, 축사 재·개축 등 상담 624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2024.12.29.~ 2025.1.19)	181명 (사망 179, 부상 2)	36개 기관 (국토부, 복지부, 문체부,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사고수습 지원 164건, 유가족 지원 504건, 법률·보험 지원 533건, 언론 대응 32건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표준편제(안)]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이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재난 현장에 ‘수습본부상황실’ 및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 피해자 지원 등 재난 수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수습본부장이 ‘현장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도 ‘현장상황실’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규정상으로도 이미 설치할 수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